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12. 15(수)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 나. 회부일자 : 2005. 2. 21(월)
- 다. 상정일자 : 2005. 2. 24(목) 제11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 2.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감사실장 천순철)

가. 제안이유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수한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내 유치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보조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
- 타 시·도에서 우리군으로 이전하여 오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안 제9조 내지 17조)
-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 요청 명문화(안 제18조)
- 투자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지급 규정(안 제1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 본 조례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의 관내이전과 신규 투자유치를 촉진하므로서 우수한 기업과 민간투자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지방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수적 요건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볼 때,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판단됨.

나.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 투자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련 주요인사로 구성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유치를 위한 공정한 평가와 선정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 투자기업의 지원에 있어서는 지방세감면,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를 비롯 기업의 이전 및 신규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으로 기업유치 및 시설투자에 대한 매리트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기업의 종업원 고용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전 기업의 인력확보를 원활히 함과 동시에 관내 노동인력 고용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례제정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전 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 시설보조금, 부지매입비 지원금액에 대한 산정 근거와 설명자료 부족으로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곳에서 조문의 형식 자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조문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5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 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자 4.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 ④ 생략	제5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군수가 위촉한다.	○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이 바람직하며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아 임명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3장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3장 투자의 지원 등	○ 투자 기업이라고 함은 본 조례 정의를 볼 때 조례안 제17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투자의 지원으로 확대 할 필요 (이전기업 포함을 의미)
제16조(투자기업의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	제16조(이전기업의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을 위하여 -----.	○ 본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을 볼 때 조문상 혼선이 예상됨.
제17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	제17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	○ 부적합 용어정리
제19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투자기업유치에 기 여한 -----.	제19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	○ 이전기업, 중·대규모 투자 기업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용어로 정리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에 따른 투자기업의 의무사항에 -----. -----.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등이 사업시행 -----.	제20조(이전기업등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의무사항에 -----. -----. ③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사업시행 -----.	○ 본 조례안 제2조의 정의 안 제17조의 내용을 볼 때 "이전기업"과 "투자기업"이 함께 포함시켜야 하므로 "투자기업"을 포함적 "기업"으로 용어정리로 조문 해석상 오해 불식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이 부과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 -----. ② 투자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 ----- 지원받은 기업 등이 ----- ----- ----- ----- ----- ② 제1항의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조문해석상 오해불식을 위한 용어정리 ○ 조문정리 (이전기업 포함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년 2월 24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사유

- 안 제5조 제2항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이 바람직하며, 또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에 따른 위원에 부군수를 신설하고
- 안 제3장은 "투자기업의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 데 투자기업이라 함은 본 조례안을 살펴 볼 때 안 제17조 중·대규모 투자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투자의 지원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조문해석에 혼선이 예상되는 부적합한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 제2항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중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군수
- 안 제3장 "투자기업의 지원 등"을 "투자의 지원 등"으로 수정

- 안 제16조 "투자기업"을 "이전기업"으로 수정
- 안 제17조 제1항 "이전기업"을 "투자기업"으로 수정
- 안 제19조 제1항 군수는 "투자기업유치에"를 "투자유치에"로 수정
- 안 제20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이전기업등의 사후관리"로 수정하고 제2항의 "투자기업 등으로부터"를 "기업 등으로부터"로 "투자기업의"를 "기업의"로 수정
- 안 제21조 제1항 "투자기업 등이"를 "기업등이"로 수정하고 제2항 "투자기업 등이"를 "제1항의 기업이"로 수정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제2항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군수

안 제3장 "투자기업의 지원 등"을 "투자의 지원 등"으로 한다.

안 제16조 "투자기업"을 "이전기업"으로 한다.

안 제17조 제1항 "이전기업"을 "투자기업"으로 한다.

안 제19조 제1항 "투자기업유치에"를 "투자유치에"로 한다.

안 제20조중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이전기업등의 사후관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투자기업 등으로부터"를 "기업 등으로부터"로 "투자기업의"를 "기업의"로 한다.

안 제21조 제1항중 "투자기업 등이"를 "기업 등이"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투자기업 등이"를 "제1항의 기업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5조(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창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 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자 4.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자 <p>③ ~ ④ 생략</p>	<p>제5조(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평창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관련분야의 기술 전문가 및 경험을 가진 자 5.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자 <p>③ ~ ④ 생략</p>
제3장 투자기업의 지원 등	제3장 투자의 지원 등
제16조(투자기업의 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	제16조(이전기업의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
제17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	제17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
제19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투자기업유치에 기여한 -----.	제19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
제2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에 따른 투자기업의 의무사항에 -----. 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 등이 사업시행----.	제20조(이전기업등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기업등으로부터 투자실행 및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의무사항에 -----. ③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사업시행----.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이 부과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② 투자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21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 지원받은 기업 등이 -----. ② 제1항의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